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6-138호

반포아파트(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반포아파트(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6. 18.

서 초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반포아파트(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09번지 일대

나. 정비구역의 면적 : 117,11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반포아파트(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사신)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106, 5층(반포동, 서건빌딩)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1. 7. 14.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2026. 6. 10.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 대지면적 : 102,930㎡

2) 건축규모 : 지하3층/지상35층, 아파트 17개동(2,09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주택 규모별 공급세대수							
	계	59㎡	84㎡	100㎡	112㎡	126㎡	142㎡	165㎡
계	2,091	492	694	231	415	182	71	6
토지등소유자	1,577	36	617	230	415	182	71	6
보류지	28	-	27	1	-	-	-	-
일반분양	506	456	50	-	-	-	-	-
재건축 소형(임대)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도로	6,203	도로	7,554	반포아파트(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자(조합)가 전부 설치하되, 「도정법」제97조 규정에 따라 무상귀속
공원	4,426	공원	5,780	반포아파트(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자(조합)가 전부 설치하되, 「도정법」제97조 규정에 따라 무상귀속
공공청사	383	공공 청사	850	반포아파트(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자(조합)가 설치(부지조성)하되, 「도정법」제97조 규정에 따라 무상귀속

라. 기존건축물의 철거 시기 : 2022. 7. ~ 2023. 2.

※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2155-734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